

##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 제5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2025년 제5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1. 11.

###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

#### 1. 최종합격자

※ 홈페이지 공고 이후 개별 안내 (SMS 또는 유선)

(응시번호순)

채용분야			응시번호
정규직	심사직 다급	부산지원	0334-000021
무기계약직	지원업무직 라급 (의료분쟁상담)	서울본원	0335-000057

⇒ 서류제출 기한 내 임용동의서 등의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합격자에게 기회가 부여되므로 최종합격자는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2. 예비합격자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습니다. \* 예비합격자 유효기간: 6개월

구분		예비합격자	
		순위	응시번호
정규직	심사직 다급 (부산지원)	예 비 1	0334-000022
무기계약직	지원업무직 라급 (의료분쟁상담)	예 비 1	0335-000012
		예 비 2	0335-000041

<다음장 계속>

### 3. 최종합격자 안내 사항

#### □ 제출서류 (필수사항, 원본제출)

- 임용동의서 \* 반드시 자필 기재
-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\* 반드시 자필 기재
- 직원 채용신체검사서 (임용예정일 기준 1년 이내 검진분,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대체 가능)
- 주민등록등본 2통
- 주민등록초본 1통 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
- 가족관계증명서 (기본증명서) 1통
- 반명함판 사진 2매 (상반신,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)
- 면접심사 전 제출한 증명서류 일체 (장애인등록증\*, 경력증명, 학위증명, 자격증명 등)  
\* '심한장애'의 경우 고용노동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"중증장애인 확인서" 추가 제출

※ 모든 서류는 최초 모집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

- 해외교육기관 학력증명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공증 필요(사본인정,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없음)

#### □ 제출방법

##### ○ '25. 11. 14.(금) 17:00 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
\* 방문 시 사전 연락 필요

\*\* (우편) (04637)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, T타워 21층 <직원채용담당자>

#### □ 임용일 : '25. 11. 24.(월)

- (첫 출근 장소)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본원 21층, 09:00까지

※ 부산지원 합격자 동일 (본원 출장 처리, 교통비 지급)

<채용 관련 일반사항, 서류반환, 이의신청, 채용비위 신고 등 문의>

-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채용담당자: 02-6210-0056
- 응대가능시간: 평일 09:00~18:00
- 채용결과 이의신청 기한: '25. 11. 11.(화) ~ 11. 25.(화) \*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최초 공고문 확인

# 임용동의서

성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상기 본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 직원채용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귀원의 직원 임용절차에 동의하오며, 내부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경우,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이 된 경우,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, 본인의 제반사항이 근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 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하여도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.

2025. . .

합격자 : (서명)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

##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(기간제 포함)작성용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공공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
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 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

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

※ **부패행위**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  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
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‘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

1, 2, 3-1, 3-2(모두충족시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제1항제1호)해당여부 -----

1, 2, 4-1, 4-2, 4-3(모두충족시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제1항제2호)해당여부 -----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

년 월 일

지 원 자

(서명)